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2/ 16 통권 1497호

CEO·CFO·COO· 회계책임자· 조세전문가· 재경실무자· 총무담당자·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족벌·학벌·군벌... '벌(閥)'의 굴레를 깨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최고경영자 CEO가 알아야 하고 잘 알면 유리한 회계
세무·재무 핵심 10가지만 제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미사용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쉼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2개의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고용
계약서상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반영함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경영자의 핵심세금·세무 요점과 회계처리반영 >

개념, 구분	세금문제 등 발생이유	회계처리
사업상 자금조달 (신규설립, 인수, 증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본: 불입자본금-자금 출처 입증(입증부족액은 증 여세 과세) 타인자본: 금융차입금-신 용대출 	차) 현금예금 〇〇〇 대) 자본금 〇〇〇 차) 현금예금 〇〇〇 대) 차입금 〇〇〇
거래 세금	매입 원부재료 매입: 전자세금계산 서입수(외상구입)	차) 매입원가 100 대) 매입채무 110 선납부가세 10
	매출 제조·가공 후 판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외상판매)	차) 매출채권 330 대) 매출액 300 예수부가세 30
급여 세금	(근로소득 등) 매월급여 원천세, 건보료 등 4 대보험 부과 납부	차) 급여 47 대) 현금예금 40 복리비 3 제세예수금 10
	실적급 사업소득	총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차) 보수 30 대) 현금예금 29 세금예수금 1
각종 세금과공 과, 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에 부과되는 사업소세 균등할 법인주민세, 기타비 용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 등 	차) 세금과공과 10 대) 현금예금 15 각종업무비용 5
이익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	법인: 당기이익 2억원까지 11% 2억 초과액부터 22% 등 개인: 사업주 종합소득 (6%~42%까지 당년도 과세)	차) 법인세 등 20 대) 현금예금 20 (개인) 이익 전액총금+종합소득세 납부액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 12월 9일 (수) · 주간제 51호 · 통권 제 1497호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97 호 / 주간 51호

2020. 12. 16.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청년창업자, 중소기업경영자의 핵심세금·세무 요점과 회계처리반영	표지
긴급시사해설	최고경영자 CEO가 알아야 하고 잘 알면 유리한 회계·세무·재무 핵심 10가지만 제시	2
CEO에세이	죽벌·학벌·군벌... '벌(閥)'의 굴레를 깨라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법무사 사용비용 법인 증빙 확인 - 회사에서 업무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지출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함 -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의 자금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됨 -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6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미사용자산 및 유류자산의 감가상각방법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올해와 내년 개인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현황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 현황	10 11
직장인 Survival	인간관계(대인관계) 중심의 직장생활 문화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으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308, 2020.05.18)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2870, 2020.04.20)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3971억원 지급	15
마케팅 Tax consulting	2개의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고용계약서상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반영함	14
세무정보	-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16 24
회계정보	-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36
경영정보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쉼다	43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최고경영자 CEO가 알아야 하고 잘 알면 유리한 회계 · 세무 · 재무 핵심 10가지만 제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알아야 할 기본내용, 의미, 효과, 문제점 대응 등
CEO행동은 회계로 나타난다 (회계는 기업간의 공용어)	경영자의 구매, 생산, 채용, 판매, 홍보광고 등 모든 행위는 회계에 반영되어 공시되고 기업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행동기준이 된다.
재무제표 기본 내용을 숙지함 (대차평균원리)	재무상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매출, 수입, 원부자재,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비용, 지급이자 금융비용)에 나타남
CEO 행동의 회계효과를 미리 전달 (Top-down 직접 효과)	회계는 모든 거래종결내용의 그림자이므로 제일 늦게 집계 되는데, CEO가 자기거래내용의 결과, 회계반영효과를 미리 알고 지시하면 문제 예방
CEO포함 경영진 보수 세금 등 (최소부담율 50% 내외)	경영자의 연봉은 1억~5억이므로 한계세율은 최소 42%+4대 보험 등 18%=총부담율 60% 내외에 이르러, 보수의 실제귀속비율은 약 50% 이하
매출누락, 비용부인시의 불이익 (해당액의 100% 이상)	회사매출누락액×최소 110% 이상, 비용부인 손금불산입의 본세와 가산세 등도 최소 35% 내외에 이르므로 투명회계와 적법납세는 실질 이익임

회계 문외한이면 추가 인건비	재무자금 담당자 추가 필요. CEO 결정이 늦게 전달되어 재무제표 작성 마감과 상부보고, 하부 재전달의 의사소통에 간부급 추가인력 필요
제품별, 사업별 손익분기점 (비용의 Tax effect 등)	모든 구매, 제조, 생산, 판매, 마케팅의 전 공정에서 BEP(손익분기점) 정도는 알아야 CEO의 각 행동, 포괄운영, 전반 경영의 진퇴결정 지침이 됨
자금수반 안되는 특별회계 항목	일상적 매출, 매입, 지출 이외, 원가회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충당금, 자산평가손실, 매출채권대손 소멸시효(3년, 5년), 재무제표 반영 안되는 무형자산 영업권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 인식	일반 기업가치계산산식(경상이익×10~20배, 매출액×1~2배, 총자산의 배율) 또는 DCF 평가방법 또는 세법상의 기업가치계산식(자산가치×40%+수익가치 60% : 이익의 10배수)
업종별 공통적 조세감면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20%),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죽벌·학벌·군벌... '벌(閥)'의 굴레를 깨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운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벤처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벤처기업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재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호시탐탐 벤처기업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유능한 사원이 벤처기업으로 고액 봉급을 받으면서 유입되고 있다. 재벌기업에서는 유능한 사원을 단속하느라 여념이 없다. 벤처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성과급을 대폭 강화하여 유능한 사원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어쨌든 벤처기업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서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 순기능도 있는 것 같다. 한편 강남의 그럴싸한 고급 술집에는 주 고객이 바뀌었다고 한다. 열걸에 큰돈 한몫 잡은 젊은 벤처기업가들의 열띤 무대가 되었다는 씩씩한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과거 재벌 놀음과 같다고 염려하는 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는 풍토는 긍정적이다. 기업의 구성 요소는 사람과 자본이 기본이다. 한국은 과거 자본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왜곡된 점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무시되고 자본의 중요성만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게다가 자본마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정경 유착으로 금융특혜를 독점하고 사람은 도구화되었다. "소유와 경영이 동일시"되고 또 "혈연으로 세습"되고 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재벌, 죽벌이 탄생됐다. 원래 "벌(閥)"자는 좋은 의미의 글자가 아니다. 죽벌, 학벌, 군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다.

재벌, 죽벌이 존재하다보니 기업 내에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창업자 오너와 그의 아들 숫자만큼 임직원들도 꽤거리져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번영을 위한 노력은 뒷전이다. 중립은 박쥐신세처럼 모든 파벌로부터 배척 당하기 쉽다. 어느 편에 붙어야 능력을 발휘할 기회라도 노릴 수 있다. 망한 재벌의 속내를 보면 오너 부자간, 오너 형

제간의 파벌 싸움이 엄존했다. 지금 살아 있는 재벌도 이러한 암투에 초연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제왕자리를 세습 받아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연, 지연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한국에서는 정치에서만 지역 병이 있는게 아니다. 대부분 오너 출신지역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들의 지역 색이 결정된다. 경상도 출신 오너 밑에서 전라도 출신이 고위임원으로 출세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출신 오너 밑에서 타도 출신들이 배겨나기 힘들다. 2세, 3세로 소유와 함께 경영이 세습되면서 학벌도 중요 변수가 된다. 2세 오너가 K고등학교 출신이면 타교 출신보다 K고등학교 출신이 요직에 발탁되기가 훨씬 수월하다. 2세, 3세로 경영이 세습될 때마다 학연을 중심으로 대폭 물갈이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사실 권력과 유착하는 창구도 학연과 학벌이 중요 매개체가 아닌가.

지금처럼 개방화, 국제화된 시대에 각종 "벌"에 농락당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쉽지 않다. 재벌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조차 소모품처럼 처리되고 능력보다 "벌"에 따라 신상이 좌우되는 풍토. 더구나 자연인인 오너와 2세의 취향까지 맞추면서 생존해야 하는 월급쟁이들.

기업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거대한 빚만 안겨주고 나라를 멍들게 하는 모든 "벌"을 극복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4일 (금)	12월 7일 (월)	12월 8일 (화)	12월 9일 (수)	12월 10일 (목)
미	달	러 (USD)	1098.10	1086.60	1082.70	1084.40	1083.60
일	본	엔 (JPY)	1057.34	1042.55	1041.01	1040.99	1039.08
캐	나	달 러 (CAD)	853.49	850.10	845.79	846.13	844.98
홍	콩	달 러 (HKD)	141.67	140.19	139.69	139.90	139.79
위	안	화 (CNH)	167.56	166.42	166.08	166.18	166.42
유	로	화 (EUR)	1333.81	1318.15	1311.31	1313.15	1308.83
호	주	달 러 (AUD)	817.04	807.94	803.09	803.81	805.49
싱	가	폴 달 러 (SGD)	823.07	815.12	809.98	810.65	809.8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0.14	267.64	265.89	266.27	266.63

법무사 사용비용 법인 증빙 확인

Q 전세권 말소신청으로 법무사를 사용하면서, 공과금 항목에 교통비 +일당, 재증명 및 대행비, 사서증서작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비용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포함 되나요? 취득세, 교육세, 증지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할까요?? 없어도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만으로 증빙 처리에 문제가 되나요??

세금 이외에 법무사 교통비 +일당, 재증명 및 대행비, 사서증서작성 등은 현금 영수증 및 계산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세, 교육세 등 세금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으며, 법무사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법무사 교통비와 일당, 대행비 등 모두가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수료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지출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함

Q 당사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은 사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지급해 줄 경우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요?

A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용 역계약 체결한 사람에게 차량지급 및 업무관련 식대지급 모두 회사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의 자금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됨

Q A사 B사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발주사인 B사가 A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이 부족하여 B사가 15년 만기의 기명식 사채를 발행해 A사가 매입(만기보유증권)을 하였습니다.

이 후 상황이 바뀌어 A사와 B사는 해당 채권의 상황에 대해 재합의(원금 변동X, 이자율 변동O)를 하여 향후 3년간 B사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A사에게 원리금균등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A사가 B사로부터 받는 상환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25%)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이자수익으로 보아 14%의 원천징수를 하면 되나요?

A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의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A사가 받는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Q

1. 계약기간 1일(당일)로 된 계약이며 계약내용은 방송촬영 4인과 방송 대본, 기획/제작 1인입니다.

→ 질문 1 : 해당의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타소득 으로서만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2 : 기타소득 처리시 대본작업한 1인은 원고료로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60%)가 맞나요? 그 외 촬영한 4인의 소득구분은 무엇이며,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나요?

A

1. 해당 용역제공자가 일회적으로 우발적으로 방송촬영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직업적으로 방송촬영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미사용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취득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동을 중단한 자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회계상 미사용자산 및 가동중단 자산도 감가상각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현행 기업회계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가동중지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사용 자산 또는 가동중지 자산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미사용 자산, 장기간 가동중지 자산, 단기간 가동중지 자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감가상각을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회계반영을 하면 된다.

◇ 일반기업회계 제10장 유형자산

10.35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무상로는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인정함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 유휴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하지만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및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일시적 유희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다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동중지에 있는 유희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미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미사용자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희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서면2팀-1107, 2006.06.1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희설비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71, 2005.12.0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한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올해와 내년 개인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현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올해	내년	올해	내년
3억원 미만	0.5	0.6	0.6	1.2
3억~6억원 미만	0.7	0.8	0.9	1.6
6억~12억원 미만	1.0	1.2	1.3	2.2
12억~50억원 미만	1.4	1.6	1.8	3.6
50억~94억원 미만	2.0	2.2	2.5	5.0
94억원 이상	2.7	3.0	3.2	6.0

화

10억원 취득, 15억원 양도, 5년 보유 주택 세금변화

취득 시기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대상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양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세액	장특공제	세액	장특공제
8.2대책 이전취득	조정지역 ○ 조정지역 × (2년 보유)	○	9억원 초과분	2,895만원	40%	3,193만원	36%
				5,285만원	10%	4,117만원	24%
8.2대책 이후 취득	조정지역 × (2년 보유)	○	9억원 초과분	2,895만원	40%	3,193만원	36%
				1억6,900만원	10%	1억3,812만 원	24%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 현황

시기 (이전 인하 정책과 주기)	인하기간	세율 인하폭	인하 사유
2008. 12. 19.~2009.06.30	약 6개월	30%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2012.09.11.~2012.12.31. (3년 2개월)	약 4개월	19~30%	유럽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2015.08.27.~2016.06.30. (2년 8개월)	약 10개월	30%	메르스 확산 이후 경기침체
2018.07.19.~2019.12.31 (2년1개월)	약 17개월	30%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
2020.03.01.~2020.12.31. (2개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6개월	70% 상반기 30%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2021.01.01.~2021.???.??	상반기 3개월~6개월 (검토중)	30~70% (검토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3. 총급여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4.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9.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라.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인간관계(대인관계) 중심의 직장생활 문화

1. 커뮤니케이션

리더는 고객 기반에 비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언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용한 의사 소통 기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통 관심사를 찾고 일치시키는 것은 대화 상대와 미묘하게 연결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2. 갈등 해결

반대가 발생하면 개별 관점을 고려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100 %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좋은 갈등 해결 기술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화를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3. 멀티 태스킹

관리자는 매일 해결해야 할 수많은 작업, 질문 및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팀의 성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개의 경쟁 우선 순위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협상

이해 관계자와 회사 간의 합의 또는 관리해야 할 반대 관점이 있든 관계없이 협상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협상 기술은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합의에 도달하면서 두 당사자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언어를 청중에게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은 협상에 유용 할 수 있습니다.

5. 조직

체계적인 관리는 시간 관리와 효율적인 워크 플로우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화된 프로세스가 있을 때만 가능한 여러 시간에 민감한 우선 순위를 처리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의사 소통, 갈등 해결, 멀티 태스킹, 협상 및 조직 기술은 모두 인간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최신 판례 예규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308, 2020.05.18

■ 질 의

-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부킹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경우
- (질의1)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사업자가 회원의 골프장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골프장사업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하여 예약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법인의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2925, 2020.04.20

■ 질 의

-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2개의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고용계약서상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반영함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2870, 2020.04.20

질 의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인건비에 비해 과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대표이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겸임하고 있는 각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규모, 근무일수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소득-510, 2020.05.21

질 의

- 질의법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으나
- 최근 과거 3년간의 미지급한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면서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과소납부한 세액을 납부함

질 의

- 위 사실관계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 신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3971억원 지급

국세청이 지난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10일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보름간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결과 102만 가구가 4383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91만 가구에 대해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지급 시한은 1월 4일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보다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으로 드러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48만 가구(52.7%)가 2005억원(50.5%)을 받았으며, 상용근로 가구가 43만 가구(47.3%), 지급액은 1966억원(49.5%)이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타격입으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면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관세사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됐다.

올해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어 면세 특허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3개정안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관세청은 현행 법에 따라 연도 매출액에 근거해 면세업계

에 특허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다. 이 수수료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3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줄어든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거주 목적에서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최대 18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 국세청, 2020. 12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12. 10.) 91만 가구에게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
-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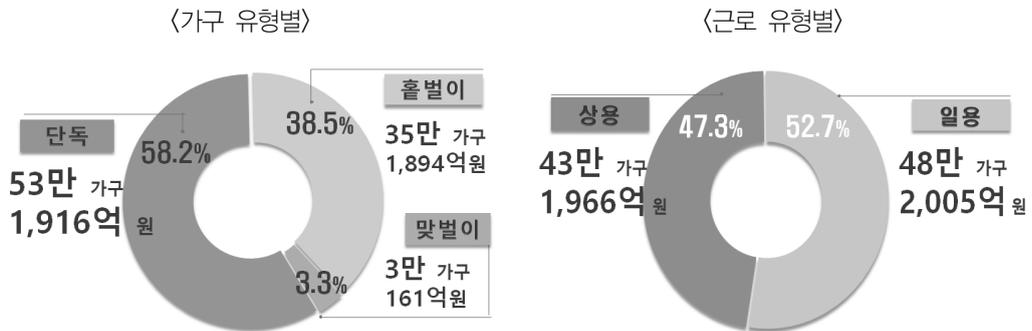
1 신청·지급 현황

-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02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383억 원입니다.
 - 심사를 완료하여 91만 가구에 3,97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2 유형별 지급현황

-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 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 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 원(4.1%) 순입니다.
-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 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 원(49.5%) 순입니다.

Ⅰ 유형별 지급현황 Ⅰ



3 지급결과 확인

-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지급일(12.18.)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오늘(12.10.)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법정기한 '21.1.4.)
-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와 '신분증' 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

인터넷

www.hometax.go.kr 접속

조회 / 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모바일앱

홈택스 앱 접속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00 원
결정근거	조폭범 100조의 근로장려금 결정
지급예정일자	12.10.

지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13자리) + #

↓

지급결과 확인 1 번

↓

지급금액·지급예정일 확인

▲ 발신번호와 신청서에 기재한 번호가 일치시 확인됩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

지방청별 상담사 안내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 신청·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신 청		지 급		지급 제외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합 계	102	4,383	91	3,971	11	412

-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20년 상반기	91 (100)	3,971 (100)	53 (58.2)	1,916 (48.2)	35 (38.5)	1,894 (47.7)	3 (3.3)	161 (4.1)

●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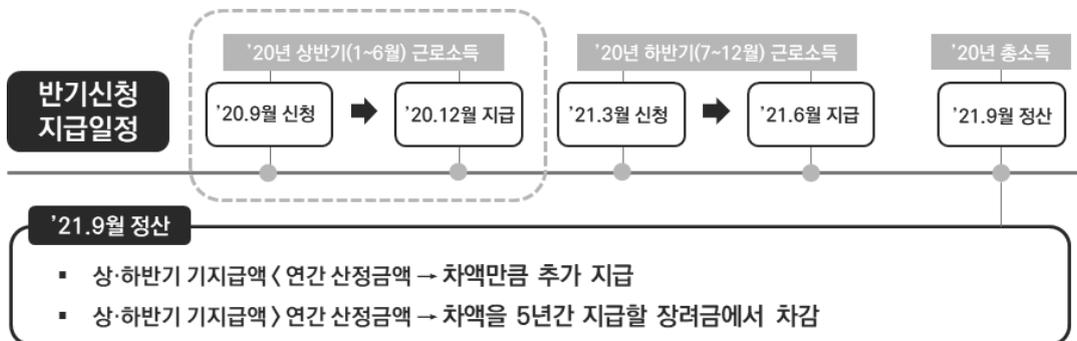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 계		일용근로가구		상용근로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년 상반기	91 (100)	3,971 (100)	48 (52.7)	2,005 (50.5)	43 (47.3)	1,966 (49.5)

참고 2 -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개요 및 2019년 지급 내역

1 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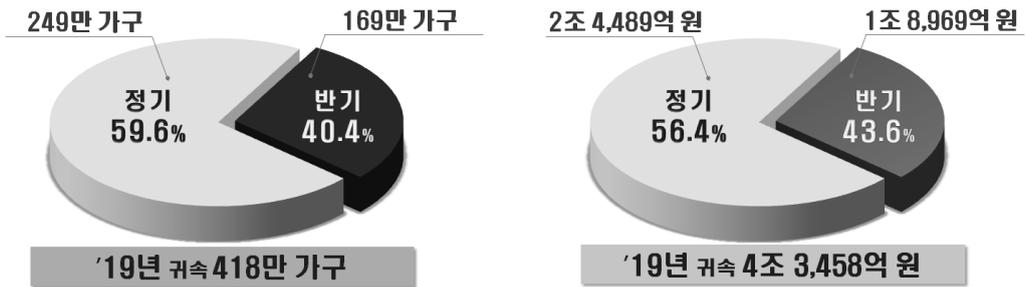
↓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20년 귀속)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20. 9. 1. ~9. 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1. 3. 1. ~3. 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 산	-	'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차감

2 2019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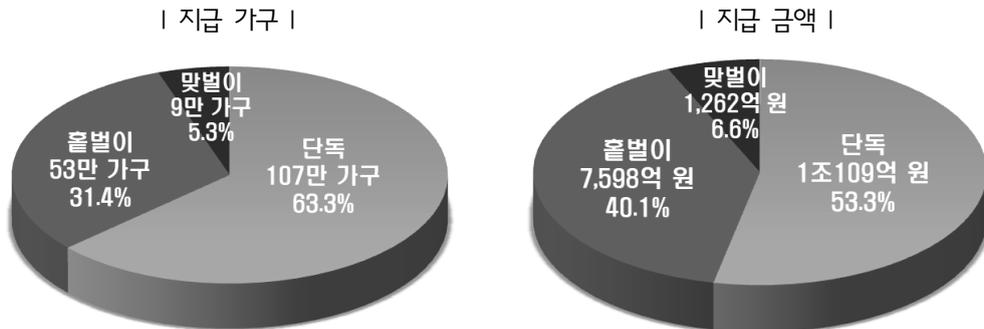
《지급 규모》

- 제도 도입 첫 해인 2019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169만 가구에 1조 8,96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가구의 40.4%, 지급금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지급현황》

- 단독가구가 107만 가구(6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53만 가구(31.4%), 맞벌이 9만 가구(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금액은 단독가구(1조 109억 원), 홑벌이(7,598억 원), 맞벌이(1,262억 원) 순입니다.



《연령대별 지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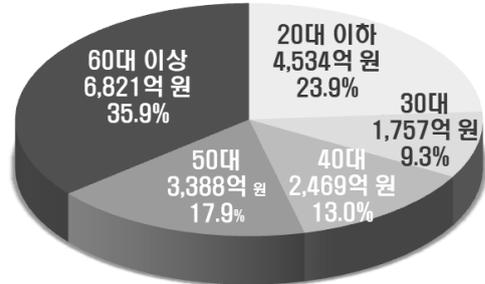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9만 가구(3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48만 가구(28.4%)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금액은 60대 이상(6,821억 원), 20대 이하(4,534억 원), 50대(3,388억 원), 40대

(2,469억 원), 30대(1,757억 원) 순입니다.

Ⅰ 지급 가구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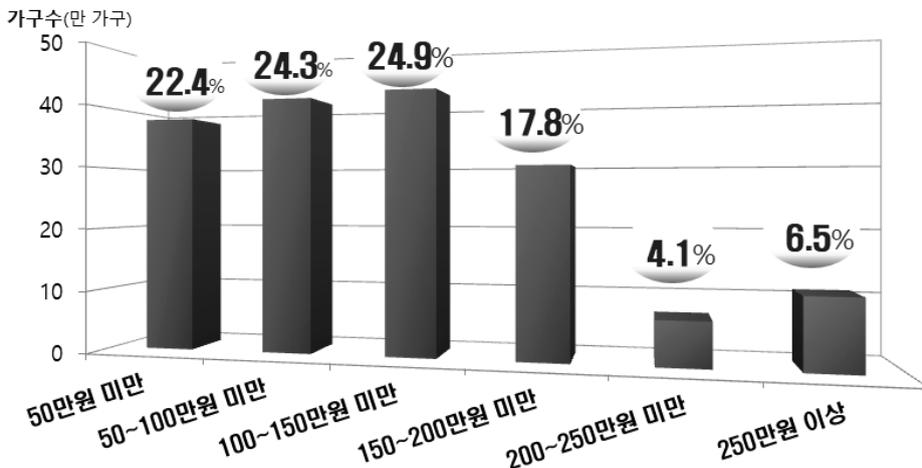


Ⅰ 지급 금액 Ⅰ



《지급액 규모별 지급 현황》

-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42만 가구, 2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41만 가구, 24.3%), 50만원 미만(38만 가구, 22.4%) 순입니다.





참고 3 -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 5. 1. ~ 5. 31.	(상반기분) 2020. 9. 1. ~ 9. 15. (하반기분) 2021. 3. 1. ~ 3. 15.
기준일	가구원	2020. 12. 31.	2019. 12. 31.
	소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산	2020. 6. 1.	2019. 6. 1.
지급시기		2021. 9.	(상반기분) 2020. 12. (하반기분) 2021. 6. (정 산) 2021. 9.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35% (정산) 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 원 지급(2021. 9.)	42만 원 지급(2020. 12.) 42만 원 지급(2021. 6.) 36만 원 지급(2021. 9.)

참고 4 - 근로장려금(E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 (근로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홀벌이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 총소득금액: 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홀벌이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맞벌이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국세청, 2020. 12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 (추진 경과) 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발생하기 쉬운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그 동안 검증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추징사례는 '③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함으로써
 -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1 발표 배경

-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보를 분석하여
 -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실시한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의 추진 성과

- 올해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¹⁾에 걸쳐 다양한 유형²⁾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1,203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 1) 2.13.(361명), 4.23.(27명), 5.7.(517명), 7.28.(413명), 8.3.(42명), 9.22.(98명), 11.17.(85명)
 - 2)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 올해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 ①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5촌 인척 B로부터 〇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 증여세 〇억 원 추징

사례 ②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 ◆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〇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0억 원 추정

전세 자금 편법 증여 사례

사례 ③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0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
 - 증여세 0억 원 추정

사례 ④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수증

-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0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값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0억 원 추정

조사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 확인 사례

사례 ⑤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

- ◆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수입금액 누락 0억 원 적출
 - 소득세 0억 원 추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억 원 부과

사례 ⑥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 ◆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0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천만 원, 법인세 ○천만 원 추정

사례 ⑦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 적출**

- ◆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 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증여세 ○억 원 및 소득세 ○천만 원 추정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사례

사례 ⑧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 ◆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건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
 - 증여세 ○억 원 추정

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하여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하여 검증할 계획입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세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 부동산 거래관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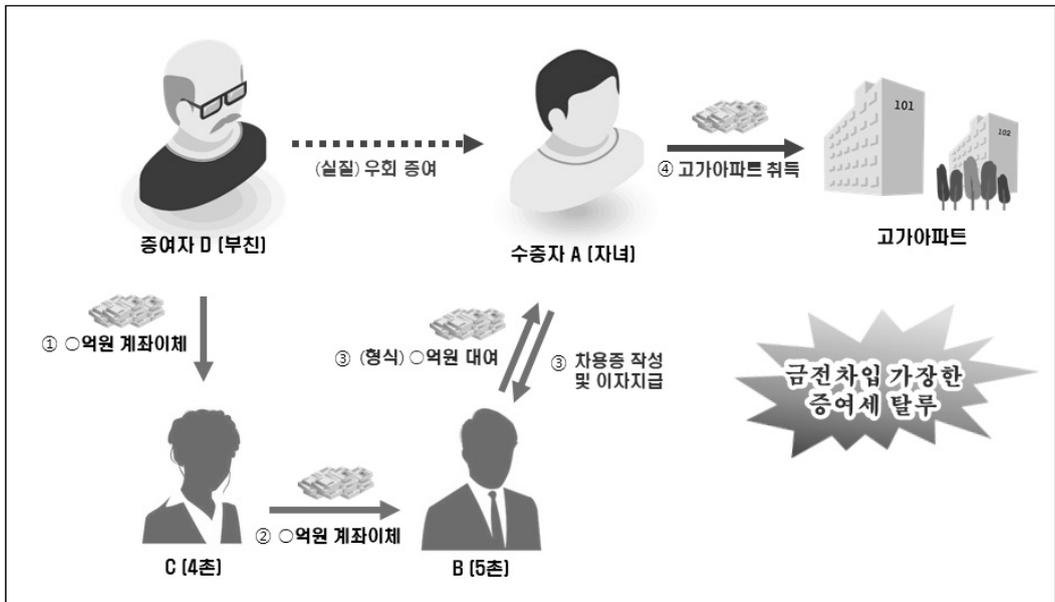
-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 ('20.12.) 하였습니다.
-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월 설치, 대전·인천지방국세청 7월 설치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사례 1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D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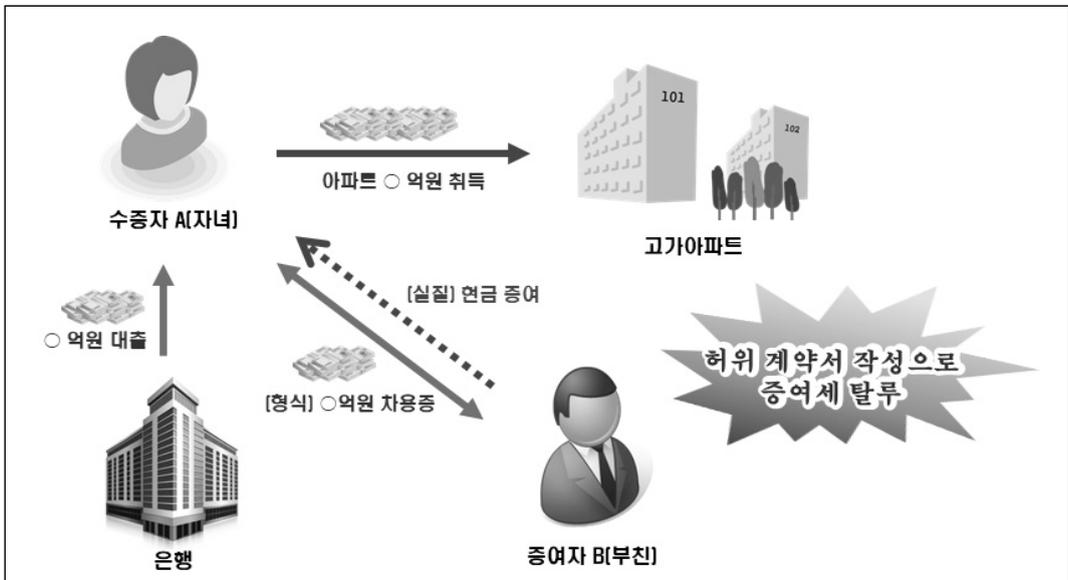
-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가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5촌 인척 B로부터 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례 2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B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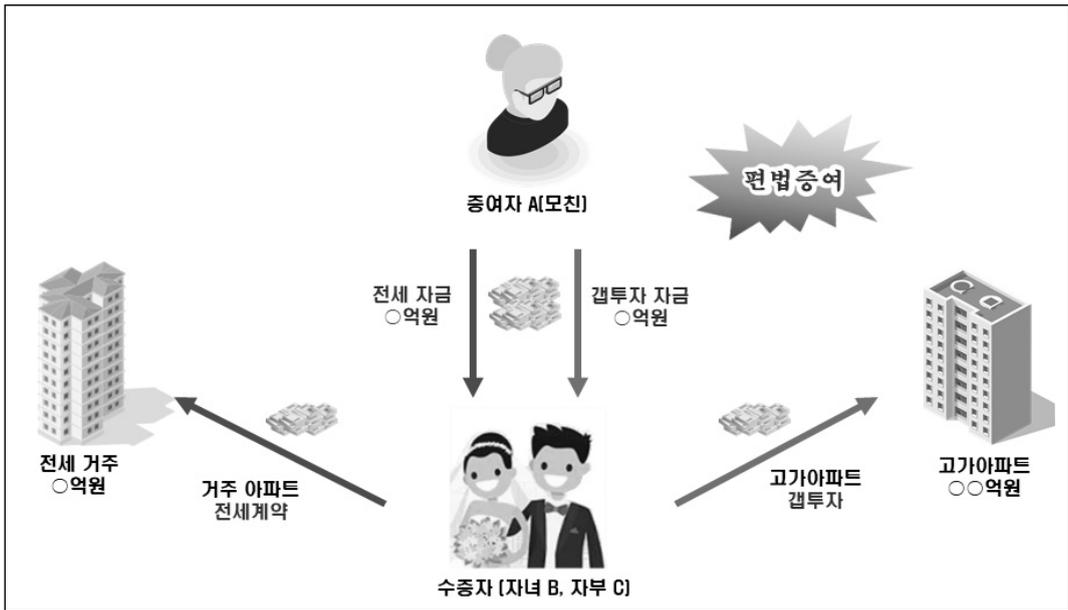


- 근로자 A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0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례 3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 인적사항
 - 증여자 : 모친 A
 - 수증자 : 자녀 B, 자부 C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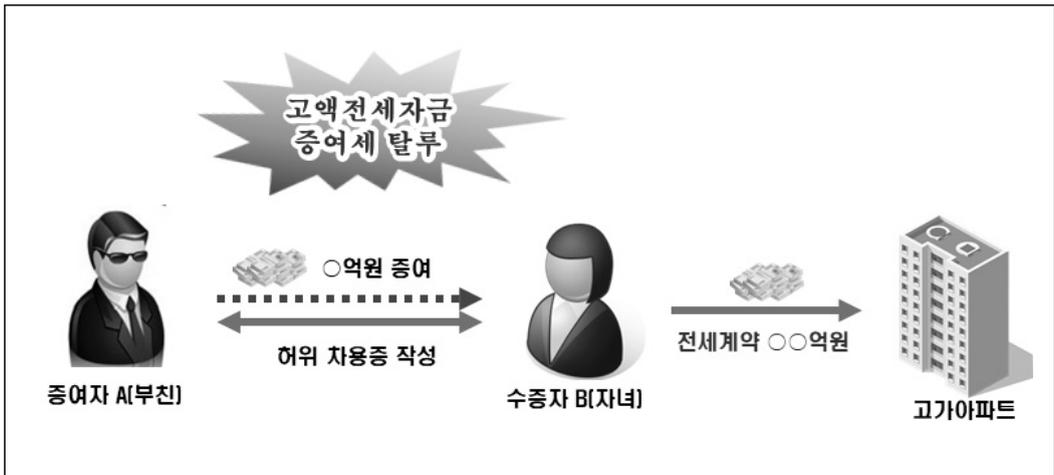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갭투자하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0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례 4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수증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A
 - 수증자 : 자녀 B

● 주요 조사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0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값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증여세 0억 원 추정

사례 5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상 호 : ○○스포츠 클럽
 - 주 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 대상자 선정
 -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 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조치사항
 - 소득세 0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 0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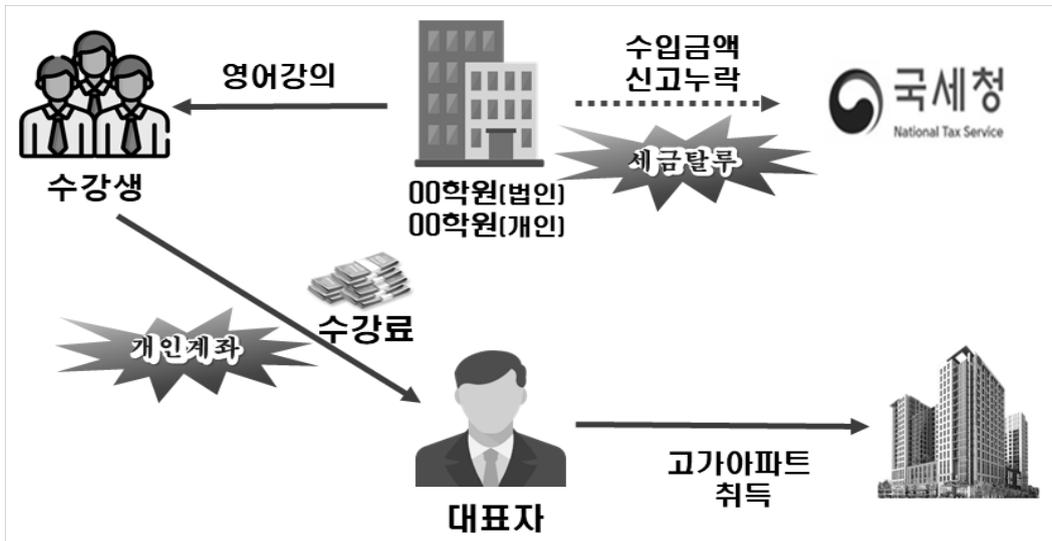
사례 6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신고누락 한 자금으로 고가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상 호 : ○○학원
- 주 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개인 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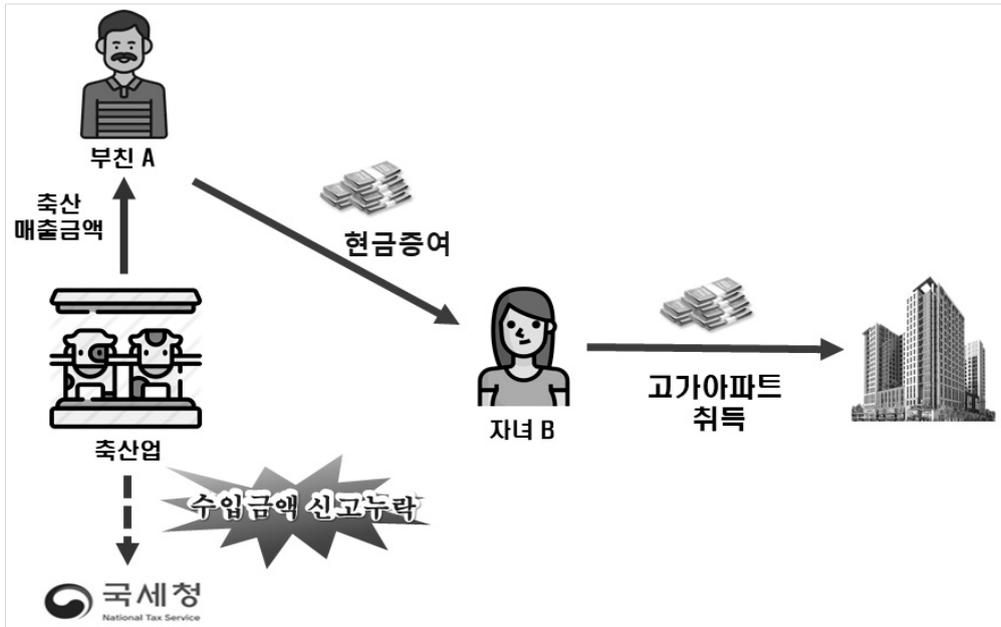
- 소득세 0천만 원, 법인세 0천만 원 추정

사례 7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누락 한 자금을 자녀에게 현금증여 하였음을 확인하고 증여세 추징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자녀
 - 주 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
 -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 확인
 - 부친의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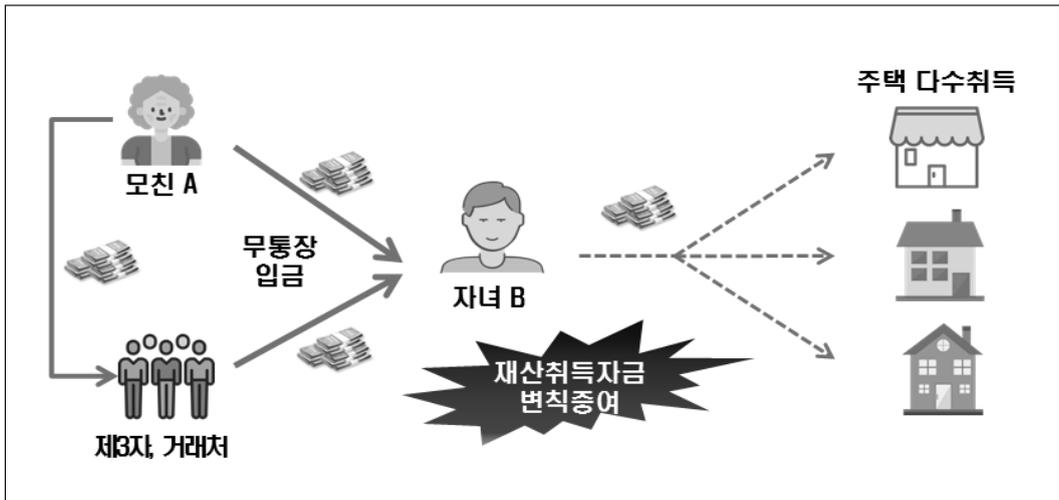
- 부친 소득세 0천만 원, 자녀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례 8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모친 A ○ 수증자: 연소자 자녀 B
- 소재지: ○○시

● 주요 조사내용



-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건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 원에 취득하여 B의 자금출처를 검증한바,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B는 동 금원으로 ○○ 소재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0억 원 추징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 금융감독원, 2020. 12

- ◆ (사전예고 효과)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T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 등의 비율이 점차 상승함
 -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3년 도입
 - '16.12월 ~ '20.5월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총 549건)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최근 들어 당해 연도(T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 회계이슈 발표 당해 연도(T년) 또는 다음 연도(T+1년)까지 사전예고 회계이슈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 ◆ (심사·감리결과)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
 - '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결과 종결처리 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26사, 54.2%) 및 중과실(20사, 41.6%)이 대부분(95.8%)을 차지
- ◆ (상장회사 등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 한편,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함

I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개요

- (배경)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3년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도입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
- (경과) '13년말부터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붙임1 참조)하였고,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19.4월부터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 중

II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분석

- (효과성 판단기준) ① 회계이슈 사전예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년) 또는 ② 다음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1년)까지 과거 감사보고서 등에 수정내용을 반영
- (기간별) '16.12월 이후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549사* 중 120사(21.9%, 126건)가 T년 또는 T+1년까지 회계이슈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
 - * 유가증권 137사, 코스닥 296사, 코넥스 39사, 사업보고서 77사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 수정 회사 현황〉

감사보고서(분·반기보고서) 정정		이익잉여금 조정 (자본변동표)*1		전기오류수정손익 인식(포괄손익계산서)*2		합계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190	146	93	90	6	24	549

*1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자본변동표상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거나 T년말 이익잉여금과 T+1년초 이익잉여금이 차이나는 법인

*2 전기오류수정사항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한 상장법인

- 이 중 T년에 반영한 건수는 58건(46%), T+1년에 반영한 건수는 68건(54%)로서, T년 및 T+1년 수정 비율이 유사
 - 다만, '18.3월까지의 T년 반영 비율이 32%(8건/25건)에 불과하였으나, '18.4월 이후부터는 T년 반영 비율이 49.5%까지 상승(50건/101건)하는 등 당해 연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이슈별) '16년말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총 4회 중 개발비 등 무형자산(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계약(14건) 관련 수정이 다수
 - 상기 회계이슈는 반복적 심사대상 선정으로 수정빈도가 높은 편
 - 특히,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테마감리 결과 감독지침 등을 통해 자진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오류수정 급증

〈사전예고 회계이슈 관련 재무제표 수정 현황(건수)〉

사전예고일	회계이슈	T년	T+1년	합계
2016.12.22	① 비시장성 자산평가	1	5	6
	② 수주산업 공시	5	5	10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	-	2	2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	1	11	12
	소계	7	23	30
2017.12.15	① 개발비	4	10	14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	-	-
	③ 사업결합	-	1	1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	3	4
	소계	5	14	19
2018.12.10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	6	2	8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	7	10
	③ 비시장성 자산평가	2	9	11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31	5	36
	소계	42	23	65
2019. 6.25	① 新리스크기준서	-	-	-
	② 총당부채·우발부채	-	-	-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4	-	4
	④ 유동·비유동 분류	-	1	1
	소계	4	1	5
총합계		58	61	119

* 오류수정시 복수의 회계이슈와 관련된 경우 복수로 집계하고, 유사 이슈가 여러 기간에 걸친 경우 최근의 회계이슈로 집계함('15년말 사전예고 이슈(7건)는 제외)

III 테마심사·감리 실시 결과

- (개요) '20.9월말 현재 심사·감리 종결 143사 중 무혐의종결 95사,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

된 회사는 48사로 평균 지적률 33.6% 수준

-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43.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 '17년 이후 표본감리 선정 대상 평균 지적률(회계이슈 제외): 43.0%(40건/93건)
- 다만, '16년은 회계이슈 외 타 계정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18년은 개발비에 대한 일제점검 수행에 따라 지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선정 연도별 테마심사·감리 결과〉

(단위 : 사, %)

감리 결과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합계
무혐의 종결	16	16	8	33	12	10	95
조치완료(A)	4	4	11	16	12	1	48
종 결(B)	20	20	19	49	24	11	143
진행중	-	-	1	1	6	9	17
합계	20	20	20	50	30	20	160
(지적률 : A/B)	(20.0)	(20.0)	(57.9)	(32.7)	(50.0)	(9.1)	(33.6)

- (주요 위반유형)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 지적·조치
 - * 한 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조치 건수(108건)가 회사수(48사)보다 많게 나타남(붙임2 참조)
 - 계정과목별로 볼 때, ①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총 23건), ②개발비 관련(14건), ③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④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의 順
 - * 매출·매출원가 동시 지적 9건(총 18건), 매출 단독 지적 2건, 매출원가·재고자산 단독지적 3건으로, 이 중 진행기준 관련 지적은 총 8건임
 - 주요 주식사항으로 특수관계자 거래(8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
 - 아울러,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36사로서,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
 -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상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
- (위반동기) 회사(48사)의 위반동기는 과실(26사, 54.2%), 중과실(20사, 41.6%), 고의(2사, 4.2%) 順
 - 48사의 세부 항목별(108건) 위반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
 - 전체 위반회사(48사) 중 심사 결과 경조치된 1사*를 제외한 47사에 대한 조치 결과,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과실 29사(61.7%), 중과실 18사(38.3%)로 나타남(고의는 없음)
 - * 新 외감법규에 따라 '19.4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 결과,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로 종결



IV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시사점)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T년 수정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가 안착
 -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 및 테마심사 대상으로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
-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 *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종조치가 가능
 - 한편, 취약기업 등*은 회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
 - *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코넥스 소속 중소기업의 위반사례가 다수

붙임 1 -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취지)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점검 대상 회계이슈를 전년도에 사전예고한 후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점검(테마감리)을 실시
 - 이는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경과) 금감원은 '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
 - 아울러,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된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한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있음
 - * 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규정 § 23) : 최근 공시자료 중심의 심사로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후 경조치로 종결하되, 반복적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2.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심사·감리연도 (회계이슈 예고일)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2014년 (`13.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14.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기재의 적정성 ③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15.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②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③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16.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②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17.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18.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③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19.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총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식 적정성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20.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③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붙임 2 -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 및 위반동기

* 위반동기는 각 세부항목별로 위반연도별 위반금액 및 위반동기를 합산하여 조치양정기준 상 최종 조치수준(고의·중과실·과실, I~V단계)으로 확정

구분	세부 유형	지적수	지적수		
			고의	중과실	과실
A유형	1. 매출채권, 매출 과대(과소)	11	1	6	4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과소)	12	2	6	4
	3.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9	-	7	2
	4. 고정자산 과대	-	-	-	-
	5. 개발비 과대계상	14	-	3	11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3	-	1	2
	7. 미지급비용, 차입금, 총당부채 등 부채 과소계상	5	-	1	4
	8.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	3	2
	9.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	-
	10. 기타손익 과대(과소)	3	-	-	3
소계		62	3	27	32
B유형	1. 자산부채 과대과소	3	-	2	1
	2. 수익비용 과대과소	7	1	4	2
	3. 영업현금흐름	2	-	-	2
	4. 신 규정 상 유동·비유동 분류	1	-	-	1
	5. 신 규정 상 영업·비영업 손익 분류	1	-	-	1
소계		14	1	5	7
C유형	1. 특관자 거래	8	-	4	4
	2. 지급보증, 담보제공	7	-	5	2
	3. 소송 등 기타 우발부채	-	-	-	-
소계		15	-	9	6
D유형	1. 계정재분류	6	-	3	3
	2. 신 규정 전 유동·비유동 분류	4	-	3	1
	3. 신 규정 전 영업·비영업손익 분류	-	-	-	-
	4. 기타 주식 미기재 등	5	-	1	4
소계		15	-	7	8
E.기타	외부감사 방해 등 외감법규 위반	2	2	-	-
총합계		108	6	49	53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 고용노동부, 2020. 12

-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 ◆ '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 '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 ◆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 * 법 개정시점('18.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 대상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 발급 예정)
 - 공모형 고용장려금1)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2)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3)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4) 등도 우대 지원한다.
 - * 1) 일자리함께하기,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지원)
 - 2)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업당 0.7억, 2억, 4억 등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
 - 3)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인건비 지원)
 - 4)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 *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
-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 ◆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라면서
 -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책 지원방안

I 추진배경

-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15일+ α)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에 적용
 - * ('20.1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 300인 이상에는 무리 없이 정착되었다고 보이나, 내년 이후 적용되는 300인 미만은 법 시행 미인지 또는 추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애로 예상
 - 30~299인 기업의 59.6%는 이미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이나, 40.4%는 공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 필요
 - * 유급휴일 운영: 15일이상 11.8%, 12~14일 0.9%, 9~11일 0.7%, 6~8일 5.6%, 0일 21.4%
-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부대의견*에 지원방안 마련 명시
 -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30~299인('21년 적용), 5~29인('22년 적용) 기업 중 관공서 공휴일 적용 관련 부담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 마련·추진

II 지원방안

1 지원방향

- ◆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0인 미만 유급휴일 전환 기업 지원, 조기도입한 5~29인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각 부처에서는 확인서를 토대로 지원

〈확인서 발급 개요〉

대상	30~299인	'20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1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 ['21.1~3월 확인서 발급]
	5~29인	'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2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년 중 준수기업은 "조기단축" 인정) ['21년 중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22.1~3월 확인서 발급]
절차	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정책 소관부처에 확인서 제출 → 각 부처에서 확인 후 지원	

2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1. 재정 지원

-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고용부>
 - 공모형 고용장려금(6개 사업) 신청 시 가점(5점) 부여
- 〈공모형 고용장려금 현황〉

고용 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1~2년간 월40~80만원,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비용(월 최대40만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국내복귀기업 사업주 ■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2년간 월40~8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한 사업주 ■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월40~80만원



고용 안정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6개월~2년 근속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전환근로자 1인당 1년간 임금증가 보전금(월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월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1년간 520만원 지원 * (주 1~2회) 1주당 5만원, (주 3회 이상) 1주당 10만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선정 시 우대 지원(가점부여)<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주요내용〉

- (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장바제어가센서 등의 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 0.7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2(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4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농·식품분야 인력지원 우대<농림부>

- 식품 및 외식기업 청년인턴십('20년 400명),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인턴 우선 지원
 - * 3개월은 월 9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6개월은 월 100만원 한도

◆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우대 지원('20년 37억원)<문체부>

-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2. 정책자금 지원

◆ 관광기금 운영자금 용자 우선 배정<문체부>

- *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 스포츠 운전(경영)자금 용자 우선 배정<문체부>

- *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3. 구인 지원

- ◆ 구인이 어려운 제조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2년) <고용부>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20% 상향 적용
 - * 현재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업종·지역은 기존 상향비율에 20%를 추가 상향)
 -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최대 5명)
 - <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제조업 규모별 고용허용한도(E-9) 상향(안) >

내국인 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연간 신규고용한도 (총고용한도내)	
	20% 상향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40% 상향 (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업종or지역)	60% 상향 (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업종&지역)		내국인 채용 시	
11 ~ 30명	10명	12명	14명	16명	4명	+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
31 ~ 50명	12명	14명	17명	19명		
51 ~ 100명	15명	18명	21명	24명	5명	
101 ~ 150명	20명	24명	28명	32명		
151 ~ 200명	25명	30명	35명	40명	6명	
201 ~ 300명	30명	36명	42명	48명		

- ◆ 고용센터 일자리 우선 매칭<고용부>
 - (온라인) 워크넷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구인·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
 - (오프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지원 순회 출장센터 등 지원

4. 기타 지원

- ◆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선정<고용부>
 - * 8~21주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작업조직·환경개선, △노사파트너십 증진,△임금·평가 개선 등)
 - 특히 어려움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 ◆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고용부>
 - * 2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
 - ⇒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20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노무전문가 무료상담(2~3회 기업 방문 및 상담) 우선 지원<고용부>

3 5~29인 기업 조기도입 추가 인센티브

- ※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 추가 인센티브 부여
- ◆ (공공조달 가점)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기재부·행안부>,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가점 부여 검토<중기부>
- ◆ (정책자금 우대)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공휴일 조기도입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 우대<금융위>

<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

기관명	지원 대상	금리인하
산 은	고용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산업, 고용창출인증기업, 세계상 고용확대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5%p
기 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 ~ 1.0%p
수 은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 이상인 기업	△0.5 ~ 0.9%p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p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적용 (0.2%p 차감)<금융위>
- ◆ (외국인력 가점)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2점)<고용부>
* “노동시간 조기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가점
- ◆ (산재보험료 할인)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 경감<고용부>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업장)
- ◆ (관세조사 유예) 관세조사 대상에서 1년간 제외<관세청>
* 다만, 4년 이내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받은 기업 등은 지원 제외
- ◆ (포상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심사 시 가점<고용부>